

# 교원인사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의 임용, 승진 및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교원”이라 함은 학생을 교육·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“전임교원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말한다.(개정 2012.7.21.)
- ③ “비전임교원”이라 함은 명예교수, 석좌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, 대우교수를 말하며, “외래강사”이라 함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말한다.
-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강의전담, 연구전담,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.(신설 2015.3.1.)

**제3조(적용대상)**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한다.

- ②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3.1.)

**제4조(임면권자)**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5조(겸직의 금지)** 교원은 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겸직이 가능한 경우 또는 타대학교 및 기관에 정기적으로 강의 출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5.3.1.)

**제6조(교원의 소속)** 교원은 학부(과), 각 대학원에 소속을 두며,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7조(강의의무)** 교원은 강의책임시간을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무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. 해당학기 책임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교원은 다음 학기에 강의미달시간 만큼의 강의를 추가로 담당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업적실적의 의무)** 교원은 임용시기별로 정한 업적실적 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의 업적실적을 매년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본교 임용 후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정년퇴직일이 3년 이하인 교원에게는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2015.3.1.)

**제9조(정년)**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.(개정 2015.3.1.)

- ② 교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짜가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.

**제10조(인사발령의 효력)**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

**제11조(교원인사위원회)**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 제49조에의거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15.3.1.)

- ② 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겸한다.

③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교무위원 임기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 자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4.8.1., 2019.3.1., 2022.1.13)

**제12조(위원장)**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**제13조(심의)**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이 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(개정 2012.7.21.)

2.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
3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는 부교수 이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
2. 학생의 교수·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

**제14조(회의 및 의결정족수)**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5조(임면 절차)**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, 보고된 교원에 대해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16조(운영 세칙)**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 제3장 임 용

**제17조(임용시기)** ① 신규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로 한다.

③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1일로 한다.(개정 2015.3.1.)

**제18조(임용계약)** ① 교원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.(개정 2012.7.21)

| 구분    | 2002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 |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 교 수 | 정년                      | 65세(정년까지)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|
| 부 교 수 | 6년                      | 계약으로 정한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 교 수 | 4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② 근무조건

교수시간 및 소속학부(과) 등에 관한 사항

③ 업적 및 성과

업적(교육업적, 연구업적, 봉사업적)실적, 진로상담,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

④ 재계약 조건 및 절차

1.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교원임용계약은 본 대학교 서식에 의한다.

**제19조(신규임용)** ① 교원 신규임용은 수시로 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신규채용에 관한사항은 [부록 1]의 “신임교수 임용 심사기준”따라 임용한다. 단,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신규임용 절차는 해당학과에서 1차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검토 심사하여 총장에게 임용인원 배수를 추천한다. 단, 단수 지원자인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. 총장은 이의가 없을 경우 그 배수 중 해당 임용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. 단,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다.(개정 2015.3.1.)

③ 신규임용 시에는 교육경력, 연구경력, 신앙노선이나 신학사상, 기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조교 등으로 아래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단, 타 대학의 교수로서 본교의 정교수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3년 내에 정년보장 교수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2.7.21.)

| 구 분 | 정 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 교 수      | 조 교 수 | 조교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|
| 연 수 | 65세(정년까지)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| 계약으로 정한 기간 |       | 1년 |

④ 본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, 퇴직전 직급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.(개정 2015.3.1.)

⑤ (삭제 2015.3.1.)

⑥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1.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업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
2.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
3.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,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에 있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4. 재외한국인학자, 외국인,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

⑦ 교원의 신규 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, 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, 학교홈페이지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해당분야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어서 추가로 공고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간을 정하여 즉시 재공고할 수 있다. (신설 2021.7.1.)

**제19조의1(기금 출연에 의한 신규임용)** 본교 건학이념에 합당하고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 교회 및 개인이 출연한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.

1. 연금 및 보수는 출연기금 내에서 운영한다.
2.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업적평가 후 1회(2년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3. 기금의 규모가 교수 운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 교수를 면직 할 수 있다. (신설 2015.3.1.)

**제20조(자격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(신설 2015.3.1.)
5.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(신설 2015.3.1.)
6. 본 교단 소속 교회에 교적이 없는 자. 단,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 교적을 갖도록 한다.(신설 2015.3.1.)
7. 본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.(신설 2015.3.1.)

**제21조(신규임용자의 자격)** ① 신규임용 시에는 수세 후 5년이 경과하고 신앙이 모범적인 자를 임용한다.

② 신규임용 시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신학과

가.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정 소지자

(개정 2019.3.1.)

나.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자, 본교단 혹은 본 교단과 신학정체성이 동일한 해외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(개정 2015.3.1.)

다. 목사 안수 후 본 교단 혹은 본 교단과 신학 정체성이 동일한 국내외 교단(교회)에서 교역한 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(개정 2015.3.1.)

2. 신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교원임용은 학부와 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되, 연구실적과 교수능력이 탁월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**제22조(신규임용 제출서류)** 신규임용 교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외국인에게는

4, 7, 8, 9, 10, 11의 서류를 면제한다.

1. 인사기록카드
2. 이력서
3.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
4.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록 된 것)
5. 주민등록 등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)
6. 연구실적심사조사서 및 연구실적물
7. 신원진술서
8. 본인 기본 증명서
9. 당회장 추천서(담임목사는 노회소속 증명서 및 노회장 추천서)
10. 수세 후 5년 이상 무흠교인증명서
11. 목회경력증명서(노회장 발행) - 신학과 임용자에 한함.(개정 2015.3.1.)

**제23조(재임용)** 재임용기간이 만료되고 동직급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 기간 내 교원업적평가 기준표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되, 승진에 탈락할 때는 동직급 재임용 역시 탈락한 것으로 한다. (개정 2015.3.1.)

1. 동직급 임용 시부터 재임용 기간 만료 시까지의 통산업적 실적(개정 2019.3.1 )
2. 전문영역 학회 활동상황
3. 교수로서의 자질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

**제24조(재임용 제출서류)**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심사조사서
2. 연구실적물 각 4부(원본 1부, 별쇄본 3부)

### 3. 기타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

**제25조(재임용결과 통보)**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계약 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. 이하 21조에서는 같다)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3.1. )

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3.1. )

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3.1.)

**제26조(이의신청)** ①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 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(개정 2015.3.1., 2019.3.1. )

②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**제27조(임용기간 만료)** ① 학기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.

② 임용기간이 만료되고도 재임용되지 않는 교원은 본교 교원직에서 탈락된 것으로 한다.

③ 삭제(2019.3.1.)

**제28조(승진시기 및 승진 소요연수)** 승진시기 및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.

(개정 2012.7.21., 2015.3.1.)

1.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한다.
2.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.

| 직 위   | 최소한의 소요연수 | 승진되는 직위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조 교 수 | 6 년       | 부 교 수   |
| 부 교 수 | 6 년       | 정 교 수   |

**제29조(승진요건)** ① 모든 교원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. 단, 예능계는 전공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.(개정 2015.3.1.)

② 모든 교원의 승진심사 청구는 채용 또는 승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하며, 2회에 한 한다.

**제30조(승진제한)** ① 징계처분으로 직위 해제를 받거나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.

② 전임대우 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학위취득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본교의 교원은 모든 연구영역, 교육영역, 교내외 봉사영역을 통해 본교의 정체성에

입각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, 본교 소속한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을 이탈하여 본교의 건학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승진, 재임용 등을 유보할 수 있다.

**제31조(승진 연구실적)**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(교육, 연구, 봉사)기준에 따라 승진연수 이내에 해당하는 실적물을 다음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최소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시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업적평가의 경우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정교수 승진 시에는 승진 후 3년 이내에 정년보장교수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. 업적평가와 연구실적은 연수별로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다.(개정2012.7.21)

| 직 위       | 업적 평가(교육 및 봉사) | 연구 실적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조교수에서 부교수 | 100점(240점 이상)  | 600% 이상 |
| 부교수에서 정교수 | 100점(240점 이상)  | 600% 이상 |

**제32조(승진임용 제출서류)**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심사조사서
2. 연구실적물 각 4부(원본 1부, 별쇄본 3부)
3. 기타 승진임용에 필요한 서류

## 제4장 재계약 임용

**제33조(재계약 임용의 조건)** ①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조건은 교원인사규정 제3장 제18조 ①항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에 준한다.

② 임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**제34조(재계약의 절차)** ① 재계약 대상 교원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승진심사 전까지의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 업적보고서를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교원인사·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,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.

## 제5장 정년보장 임용

**제35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** ①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이를 겸무한다.

② 정년보장 심사는 별도의 심사평가규정을 두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.(개정 2015.3.1.)

**제36조(정년보장임용의 요건)**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부교수로서 6년 이상 재직하고, 교원인사·업적심사에 관한 내규에 의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36조의1(정년보장 임용의수)** 정년보장 임용 교원수는 본교 교원 정원범위의 25% 이내로 한다.(신설2014.2.1)

**제37조(정년보장심사의 절차)**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교원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심사 직전까지의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의거, 평가된 업적평가결과와 소정의 양식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교원인사·업적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현 직급 임용기간 중의 업적을 심사하며, 심사 기준과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 및 제10장 교원 업적평가

기준에 따른다.(개정2015.3.1.)

③ 총장은 심사결과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여부를 제청한다.

##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

**제38조(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제출방법)** 1. 인문·사회계열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시 연구업적은 국제·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실적으로 한다. 국제전문학술지는 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하며,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하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발행하는 해당학과 전공관련분야 학회의 학술지에 한한다. 단, 예능계열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시 연구실적은 규정된 국내외 연주, 발표, 지휘, 창작활동 등 발표회 실기점수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논문은 질병 및 기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경우 최대 100%까지만 인정한다.

(개정 2014.2.1., 개정 2019.3.1.)

2. 연구실적은 논문 별쇄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. 단, 연구실적 중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임용일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음악분야에 속한 교원의 연구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평가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연물 자료는 영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2019.3.1)

**제39조(연구실적물의 인정 범위 및 평가기준)**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실적물은 <교원업적평가규정> 제1장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

(개정 2019.3.1.)

2. (삭제) (2019.3.1.)

3. (삭제) (2019.3.1.)

**제40조(연구실적물 심사)** 연구심사물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심사위원 수

가. 본 대학교의 동일직급 이상의 교원 : 2명(단, 본 대학교 해당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교원으로 위촉한다.)

나. 타 대학교의 해당전공분야 상위직 교원 : 1명

2. 심사위원 위촉방법

가. 본 대학교 심사위원 : 교원인사위원장이 위촉

나. 타 대학교 심사위원 : 타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장이 위촉

3. 연구실적물 평정

연구실적물은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을 얻어야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.

4. 심사료 : 심사료는 타 대학교 심사위원회에게만 지급한다.

## 제7장 연구년 및 휴직

**제41조(연구년 교원)** 본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교원연구년 교수제도를 두되, 6년 이상 본교에 근속 재직한 교원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- 1년간 국내·외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, 처우는 현직 보

수(본봉)에 준하도록 할 수 있다.(개정2015.3.1.)

**제42조(휴직의 사유)**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,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단, 제1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
(개정 2020.11.1.)

6.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)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(개정 2020.11.1.)

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(개정 2020.11.1.)

7의2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(개정 2020.11.1.)

8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
9.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(2012.7.21)

10.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,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(2012.7.21)

11. 교원이 공익목적의 공공기관에 임용될 때(2012.7.21.)

12. 「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(개정 2020.11.1.)

13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(개정 2020.11.1.)

**제43조(휴직의 기간)** 교원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1.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2.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3.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.

4.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(2012.7.21)

5.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2.7.21.)

6.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.

7.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(개정 2012.7.21.) 이내로 한다.

8.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12.7.21.)

9. 제4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, 연구 또는 연수기간

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12.7.21.)

10. 제 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2.7.21.)

11. 제 42조의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, 같은 항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(개정 2020.11.1.)

**제44조(휴직교원의 신분)**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42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**제45조(휴직교원의 처우)** ①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(기본급)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(기본급)의 8할을 지급한다.(개정 2012.7.21.)

② 제42조 제2항, 제4항, 제6항 및 1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2.7.21.)

## 제8장 해임 및 징계

**제46조(직위해제 및 해임)**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자

2.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

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,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④ 제①항 또는 제②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,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%를 지급한다.

⑤ 임면권자는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.

⑥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,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 제①항의 직위해제 또는 제②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야 한다.

⑧ 제②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,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

**제47조(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 등의 금지)** ① 교원은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학과의 통·폐합에 의하여 폐과나 과원이 된 때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
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48조(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)**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,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

## 제9장 보 직

**제49조(보직임명)** ① 본교 법인 정관 90조에 따른 교원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제①항의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50조(사무 인계인수)** 교원이 보직 임면을 받을 경우 임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 단,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
## 제10장 교원업적평가

**제51조(업적평가)** ①교원의 승진, 재임용 등 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, 연구, 봉사의 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5.3.1.)

## 제11장 인사사무처리

**제52조(책임부서)**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관리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행한다. 단, 교원의 연금, 의료보험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보수는 경리과에서 행한다.

**제53조(인사관리서류)** 인사관리 서류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임용에 관한 서류
2. 포상에 관한 서류
3.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

**제54조(인사기록 변경)** 교원의 신분, 자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5조(임용취소)**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된 교원을 임용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장은 당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12장 보 칙

**제5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법인정관에 따르며, 휴직 만료 후 복직 또는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(신설 2013.8.9.)

**제57조(규정의 개폐)** 본 규정의 개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(신설 2012.7.2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단, 제38조와 제39조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임  
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.)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부록 1]

신임교수 임용 심사기준

- ① 신임교수 임용심사는 서류심사(실적심사)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되, 필요할 경우 공개강의(연주)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② 신임교수 임용심사 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신학과 신규교수는 수세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교단과 본교의 신학적 입장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
  - 나. 신학과 이외 학과 신규교수는 세례교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
  - 다. 시민권, 영주권 소지자는 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인문·사회·사범계열 학과 교수임용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(실적심사)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| 항 목(배점)          | 평 가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력(30점)          | ① 박사학위 소지자는 30점을 부여한다.<br>②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전공영역과 다를 경우, 5점 감점한다.(신학과)<br>③ 모집학과 전공(학·석·박사)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5점 감점한다.(신학과 이외)<br>④ 모집전공과목과 박사학위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상치할 경우 탈락 시킨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수 경력(15점)       | ① 최근 4년 이내 대학에서 1년간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우, 1년에 5점까지 배점한다.<br>② 고등학교 교원 경력자는 50%<br>③ 국가 및 공공전문연구소 전문연구원 1년에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학 및 대학원 성적(15점) | 학부, 석사, 박사과정별 졸업성적을 각 5점까지 배점하되, A+: 5점, A: 4점, B+: 3점, B: 2점, C+: 1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저서(20점)          | ① 단독 저서: 전문연구 저서는 권당 5점으로 배점한다.<br>② 단독 역서: 전문단독 역서는 권당 4점으로 배점한다.<br>③ 단독 편저: 전문단독 편저는 권당 3점으로 배점한다.<br>④ 공동 저서는 아래와 같이 배점한다.<br>(1) 2명 공저 : 3점 (2) 3명 공저 : 2점 (3) 4명 이상 공저 : 1점<br>* 단, 저서 출판사는 출판협회(ISBN) 인정 출판사에 한한다. |
| 연구논문(20점)        | ① 연구논문은 최근 4년 이내 것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는 편당 5점으로 배점한다.<br>②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외의 대학·연구기관 학회의 논문은 편당 3점으로 배점한다.<br>③ 공저인 논문은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(P/F)          | 학문과 전문성과 신앙 및 인품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합(P)/부적합(F)판정한다. 단, 부적합(F)인 경우 심사결과 관계없이 탈락으로 판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④ 음악학부(개정2012.7.21) 교수임용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(실적심사)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| 항 목              | 평 가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력(30점)          | ① 해외 유명 음악대학의 Master 혹은 그에 상응한 수준의 유럽 지역 Diploma 소지자는 30점까지 배점한다.<br>② 박사학위 소지자는 30점까지 가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수경력(20)         | 최근 4년 이내 대학에서 1년간 9시간 이상 강의(레슨 포함)를 담당한 경우, 1년에 5점까지 배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 주 경 력 ( 5 0 점) | 최근 4년 동안 공인된 장소에서 공연한 연주회에 한하되, 다음 1, 2항은 각각 년 4회를 최대치로 한다.<br>① 독주회: 1회당 4점까지 배점한다.<br>② 협주회: 1회당 3점까지 배점한다.<br>③ 종합연주회: 1회당 1점까지 배점한다. |
| 기타(P/F)          | 학문과 전문성과 신앙 및 인품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합(P)/부적합(F) 판정한다. 단, 부적합(F)인 경우 심사결과 관계없이 탈락으로 판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⑤ 공개강의(연주)를 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
- 가. 공개강의(연주)는 인사위원회나 해당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.
- 나. 공개강의(연주) 시 교수, 학생 또는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참석할 수 있다.
- 다. 공개강의(연주)의 시간, 장소 등은 교무처와 해당 학과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라. 강의(연주) 종료 후 질문할 수 있다.
- 마. 공개강의(연주)는 점수화하지 않고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.

⑥ 면접심사

- 가. 면접심사는\_교무위원 및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.
- 나. 면접심사는 교수로서의 인품과 신학노선 및 신앙생활, 학과 발전계획 등을 심사한다.
- 다. 면접 결과는 점수화하지 않으며 당락만을 결정한다.

⑦ 최종 임용후보자 확정

해당학과에서 1차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검토 심사하여 총장에게 임용인원 배수를 추천한다. 단, 단수 지원자인 경우 이를 예외로한다. 총장은 이의가 없을 경우 그 배수 중 해당 임용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.(개정2015.3.1.)

## 전임교원 임용지원자 심사평정표

### 1. 인문·사회계열

| 번호 | 전 공 | 지원자 명<br>(가나다 순) | 학력<br>(30) | 교수<br>경력<br>(15) | 대학원,<br>학부<br>성적(15) | 저서<br>(20) | 연구<br>논문<br>(20) | 기타<br>(P/F) | 계 | 평정<br>순위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1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2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3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4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5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6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7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8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
### 2. 음악학부

| 번호 | 전 공 | 지원자 명 | 학력<br>(30) | 교수<br>경력<br>(20) | 연주<br>경력<br>(50) | 기타<br>(P/F) | 계 | 평정<br>순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1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2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3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 4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
위와 같이 평정함.

년 월 일

평정자 직급 \_\_\_\_\_ 성명 \_\_\_\_\_ 인